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430

발의연월일 : 2023. 7. 25.

발 의 자:민병덕·서영석·권칠승

민형배 · 홍성국 · 한병도

강득구・조오섭・이용빈

이동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. 재 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으며, 재난으 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 정임.

현행법은 재난피해 공동주택의 주차장, 승강기, 전기 및 수도시설등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, 재난의 구호 및 복구비용선지급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재난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저해하고 있음.

「대한민국헌법」 제34조제6항은 "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"라고 명시하고 있음.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, 재해 피해자가 "온전한 일상 회복"이 가능하도록 "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"를

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포함함 (안 제66조제3항제2호 등).
- 나.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며,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하여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 고하도록 하는 '절차 조항'을 삭제함(안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택 및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차장, 승강기,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

제66조의2제1항 중 "지급할 수 있다"를 "지급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복구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복구비 산정 중인 피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	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
조 등의 지원) ①・② (생 략)	조 등의 지원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
	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택
	및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
	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
	한 주차장, 승강기, 전기 및
	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
	지원
<u>3</u> . ~ <u>4</u> . (생 략)	$\underline{4}$. \sim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
	와 같음)
<u>5</u> . (생 략)	<u>6</u> . (현행 제5호와 같음)
<u>6</u> . (생 략)	<u>7</u> . (현행 제6호와 같음)
<u>7</u> . (생 략)	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
<u>8</u> . ~ <u>9</u> . (생 략)	$9. \sim 10$. (현행 제8호 및 제9
	호와 같음)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66조의2 ①지방자치단체의 장	제66조의2 ①
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	
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	
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	

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(이하 "복구비등"이라 한 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• ④ (생 략)

	<u>지</u>
급하여야 한다.	
<u><</u> 삭 제>	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